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4. 25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4. 08

나. 제안자 : 이용범, 이강호, 류수용, 안병배, 최용덕, 신동수 의원
(찬성자 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. 04. 0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4. 25(제2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용범 의원
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,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

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3조 제7항 신설)

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위임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10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.
- 지난 1996년부터 인천광역시는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10일간 ‘장기재직휴가’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에 「주 40시간 근무제」가 본격 시행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일수가 축소되고 동 제도도 폐지된 바 있음.
-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각 개인의 재충전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
- 그러함에 따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5일 내지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동 조례안 개정시 특별휴가 대상자가 전체 인원의 67%이상을 차지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, 휴가인원과 부서별 휴가자 안배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홍성욱 위원>

○ 예전에 시행이 폐지된 사유는?

⇒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폐지되었으나 군수, 구청장 협의회, 노조 등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건의

○ 현재 공직자가 갈수 있는 휴가는?

⇒ 6년 이상 재직시 연간 21일 휴가 가능

○ 특별휴가 제도의 의미는?

⇒ 교계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이 5년 마다 안식년 제도 실시. 10년 근무시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의미임.

○ 광역자치단체 중 5개, 기초자치단체까지는 62개 단체 실시, 휴가일수도 차등이 있음. 휴일 일수가 적당한가?

⇒ 재직기간이 3단계로 구분, 차등 두는 것이 좋을 듯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최용덕, 류수용, 이강호, 홍성욱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특별휴가)</p> <p>① ~ ⑥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.</u></p> <p>1. <u>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</u></p> <p>2. <u>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</u></p> <p>3. <u>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</u></p>